

투자 위험 등급 : 1등급[매우 높은 위험]						키움투자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1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투자신탁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키움차세대작은거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키움차세대작은거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키움차세대작은거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2026년 09월 06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26년 09월 18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매출) 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 Tel. 02-789-0300, www.kiwoomam.com
한국금융투자협회 Tel. 02-2003-9000, www.kofia.or.kr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참조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인 ‘키움 차세대작은거인증권모투자신탁[주식]’은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를 전체 주식편입비율의 60% 이상으로 하는 투자신탁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섹터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 및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으며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약정보

(작성기준일: 2026.09.06)

키움차세대작은거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펀드코드: A0566]

투자위험등급 : 1등급[매우 높은 위험]						키움투자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1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	2	3	4	5	6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대부분을 '키움차세대작은거인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에 따른 가격 변동 위험, 중소형주 투자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키움차세대작은거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 자산총액의 60%이상(중소형주에 대한 투자는 전체 주식편입비율의 60% 이상)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90% 이상을 투자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모자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단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합성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 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 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합성 총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1)	납입금액 의 1.0% 이내	1.445	0.700	1.38	1.466	248	404	568	921	1,970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 (C1)	없음	2.145	1.400	1.60	2.145	220	408	588	957	2,053
	수수료선취- 온라인(A-e)	납입금액 의 0.5% 이내	1.095	0.350	1.05	1.114	163	283	408	678	1,479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 e)	없음	1.245	0.500	1.10	1.264	130	266	409	716	1,630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은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합성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보수·비용 (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모투자펀드 보수·비용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11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단위: %)	클래스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 1년 2025.04.01~ 2026.03.31	최근 2년 2024.04.01~ 2026.03.31	최근 3년 2023.04.01~ 2026.03.31	최근 5년 2021.04.01~ 2026.03.31	설정일 이후				

키움차세대작은거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수수료선취-오프라인(A1)	2011.03.31	104.68	36.55	27.43	15.62	9.90			
	수수료선취-온라인(A-e)	2014.06.11	105.34	37.02	27.86	16.02	10.82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2011.03.31	105.04	36.81	27.67	15.84	10.05			
	비교지수	2011.03.31	71.81	25.66	21.49	8.70	5.46			
	수익률 변동성	2011.03.31	29.91	27.91	25.56	23.81	22.17			
주1) 비교지수: KOSPI * 100%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 2022년 1월 14일부터는 [MKF 중소형 Price Return 지수 * 100%]가 비교지수로 적용됩니다.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연평균수익률 (국내주식형, 단위:%)			운용경력 년수	
				집합투자 기구수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이길용	1986	수석	4개	1,642	-	-	122.76	67.46	
									1년 9개월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팀이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팀운용 방식으로 운용되며 책임운용전문인력 부재 등 상황에 따라 해당 팀 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주요투자 위험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국내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 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서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다른 여타의 자산보다 그 변동								

키움차세대작은거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투자 시에는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위험관리와 초과수익을 위해 선물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에 투자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업종 집중투자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한정된 투자대상, 산업섹터, 업종 또는 종목에 집중하여 투자함으로써 좀더 분산 투자된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비해 더 큰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큰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시장상황 또는 환경변화에 불리하게 영향을 받아 그 자산의 가치가 더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에 비해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새로이 기업공개가 되는 주식(이하 “공모주”라 함)은 과거거래 전례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주식보다 더 큰 가격변동성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주 물량은 한정되어 있어서 동일한 거래를 하려는 시장참여자들의 경쟁으로 충분한 물량을 취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주는 보다 유리한 가격과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매도금지 규정(Lock-up)에 종속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투자자는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 대상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소형주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전체주식편입비율 중 60% 이상을 중소형주에 투자합니다. 중소형주는 대형주에 주로 투자하는 것보다 더 큰 위험 및 가격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중소형주의 경우 회사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 경제상황 변동의 악재 등에 더 민감하고 거래량도 급속히 감소할 수 있어 가격하락폭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고, 이로 인한 투자원금액 손실이 대형주 투자에 비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입방법	· 오후 3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환매방법	·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환매대금을 지급 ·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 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합니다)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Class 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① Class 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Class C2 수익증권으로 전환 ② Class 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Class C3 수익증권으로 전환 ③ Class 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Class C4 수익증권으로 전환 - 상기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 상기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하며, 전환일이 영업일이		

키움차세대작은거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따라 해당 수익증권의 환매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환매청구에 대한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집합투자업자	키움투자자산운용(주) 대표번호 : 02-789-03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kiwoomam.com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조좌
효력발생일	2026년 09월 18일	존속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선취 (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1년 10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11개월
		수수료후취	일정 기간 이전에 환매할 경우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미징구 (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1년 10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11개월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 (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말합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보수체감 (CDSC)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무권유 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 (F)	기관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 등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 랩(W)		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특정금전신탁계약	

		보험업법상의 특별계정 등을 통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기타에 해당하는 클래스의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계약 및 투자설명서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 나. 종류별 가입자격'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iwoomam.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iwoomam.com)

[목 차]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0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10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10
3. 모집예정금액	10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0
5. 인수에 관한 사항	10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11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11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11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12
4. 집합투자업자	12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12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13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15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5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9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21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24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28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29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34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등에 관한 사항	38
1. 재무정보	38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41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42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46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46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47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47
4. 일반사무관리회사	48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49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49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50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50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52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53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5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55
[붙임] 용어풀이	56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명 명칭)	펀드코드
키움차세대작은거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A0566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A056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	A056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2)	A056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3)	A057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4)	A0571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A057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A057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C-I)	AQ77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AQ773
수수료선취-온라인 (A-e)	AS858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AS859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BP77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BP77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	DI901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e)	DJ31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2(퇴직연금))	DJ317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2e(퇴직연금))	DJ318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	DJ319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퇴직연금))	DJ320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

- 종류형(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 모자형(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X]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이 투자신탁은 10조원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주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추가형으로 모집기간 없이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다. 모집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1)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모집(매입)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부의 내용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명 명칭)	펀드코드
키움차세대작은거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A0566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A056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	A056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2)	A056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3)	A057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4)	A0571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A057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A057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C-I)	AQ77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AQ773
수수료선취-온라인 (A-e)	AS858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AS859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BP77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BP77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	DI901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e)	DJ31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2(퇴직연금))	DJ317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2e(퇴직연금))	DJ318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	DJ319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퇴직연금))	DJ320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시행일	주요 내용
2011.03.31	최초 설정
2012.02.06	사무관리사 변경 HSBC펀드서비스 -> 신한아이타스
2014.03.21	-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의 변경 변경전 : 키움작은거인증권투자신탁1호[주식] 변경후 : 키움작은거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자본시장법 및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 채권평가사 추가(NICE피앤아이) - Class C-I, Class C-F 신설 / Class C-W 가입자격 변경
2014.05.30	- Class A-E, Class S 신설
2014.12.18	- 합병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변경(키움자산운용 → 키움투자자산운용)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김지훈 → 정동욱)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 삭제 - 사무관리사 변경(신한아이타스 → 우리펀드서비스) 및 채권평가사 추가(에프엔자산평가) 등
2015.06.17	- 투자신탁의 해지에 관한 법 개정사항 반영 - 세법 개정사항 반영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등
2016.02.04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2016.01.21) 반영
2016.07.02	- 투자위험 등급 분류 체계 개편 내용 반영
2016.07.30	- 증권시장 거래시간 연장으로 인한 매입 및 환매 기준시간 변경
2017.02.03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투자신탁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 분배 유보)
2017.04.29	- Class AG 수익증권 및 CG 수익증권 신설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등

키움차세대작은거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2018.06.15	-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등
2018.12.21	- 보수 인하
2019.05.22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2019.09.25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2019.8.1) 반영 - 전자증권법 시행('19.9.16.)에 따른 내용 반영
2020.05.07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 운용전문인력 변경(정동욱→김연찬) - 전자증권법 시행('19.9.16.)에 따른 내용 추가 반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 반영
2021.04.15	- 투자위험등급 변경 (2등급 -> 1등급)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2021.05.07	- 환매수수료 삭제 - Class C-P, Class C-Pe, Class C-P2(퇴직연금), Class C-P2e(퇴직연금), Class S-P, Class S-P2(퇴직연금) 신설
2022.01.14	- 모투자신탁의 비교지수 변경에 따른 자투자신탁 비교지수 변경 ([KOSPI × 100%] -> [MKF 중소형 Price Return 지수 × 100%])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2022.06.03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2023.04.18	- 투자위험등급 변경(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2등급 높은 위험)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등
2024.05.23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표준편차 21.64% → 97.5% VaR 41.19%)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위험등급 산정기준 업데이트 등)
2024.10.30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
2025.05.30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실제 수익률 변동성 41.19% → 49.45%)
2026.04.10	- 투자위험등급 변경(2등급 높은 위험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실제 수익률 변동성 49.45% → 62.16%)
<u>2026.09.18</u>	- 투자신탁 명칭 변경(<u>키움작은거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u> → <u>키움차세대작은거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u>) - 모투자신탁 명칭 변경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u>김연찬→이길용</u>)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관련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키움투자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TP타워 12층 (대표전화: 02-789-0300)

주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2026.09.06 현재)

1)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연평균수익률 (국내주식형,단위:%)				운용경력년수 및 이력
			집합투자 기구수	운용 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이길용	1986	수석	4 개	1,642	=	=	122.76	67.46	*운용경력: 1년 9개월 (2018.06. ~ 2019.06.) 아너스티자산운용 주식운용팀 (2019.06. ~ 2021.04.) HDC 자산운용 주식운용팀 (2021.04. ~ 현재)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운용팀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있는 집합투자기구 운용 규모 : 해당사항 없음.

-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팀운용 방식으로 운용되며 책임운용전문인력 부재 등 상황에 따라 해당 팀 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주2) 당사의 펀드운용은 팀제에 의해 운용하고,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이 교체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 주3)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주5)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이며, '이력'은 운용전문인력의 과거 10년간 주요 이력입니다.

2)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구분	성명	운용기간
책임운용전문인력	정동욱	2014.12. ~ 2020.05.
	김연찬	2020.05. ~ 2026.09.
	이길용	2026.09. ~ 현재

주1)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모자형

키움차세대작은거인증권모투자신탁[주식]



키움차세대작은거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4)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수수료선취-온라인 (A-e)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2(퇴직연금))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2e(퇴직연금))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퇴직연금))

나.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선취 (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1년 10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11개월
	수수료후취	일정 기간 이전에 환매할 경우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0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1년 10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온라인형(A-e, C-e)의 경우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11개월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말합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보수채감 (CDSC)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무권유 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 (F)	기관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 등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	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특정금전신탁계약, 보험업법상의 특별 계정 등을 통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기타에 해당하는 클래스의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약관 및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나. 종류별 가입자격'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① Class C1 수익증권을 가입한 투자자는 1년 이상 경과시마다 Class C2 → Class C3 → Class C4 로 자동 전환됩니다. (전환일 당일의 기준가격으로 전환)

② Class C2, Class C3, Class C4의 경우에는 최초 가입이 불가능한 클래스로 Class C1으로만

최초가입이 가능합니다.

다. 모자형 구조

-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키움차세대 작은거인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주요투자대상	- 주식 60% 이상(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증권시장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하며,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는 전체 주식편입비율의 60% 이상으로 함) - 채권 40% 이하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며, 주식에 60%이상(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하며,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는 전체 주식편입비율의 60% 이상 투자) 투자하여 보유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중소형주란? 시가총액 100위(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합하여 매 분기말 산정) 이내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 다만 주식의 편입시점에는 중소형주였으나 이후 중소형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기 매입한 것은 중소형주로 본다.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시장점유율 50% 이상 기업을 저평가 수준에서 매입하여 장기투자하고, 『Turn-Around + 새내기 종목 + 저평가 종목』 에 적극 참여하여 장기적인 자본 증식을 추구 ① 장기성장이 가능한 기업에 투자 ② 업황 개선에 따라 Turn - Around 국면에 있는 업종과 종목

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 이 집합투자기구는 모자형구조의 투자신탁으로서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주식에 60%이상(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하며,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는 전체 주식편입비율의 60% 이상 투자)투자하는 ‘키움차세대작은거인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90%이상	<신탁계약서 제3조 제3항에 의한 모투자신탁> 키움차세대작은거인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수익증권
②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10%이하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1년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③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②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예외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②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모투자신탁 투자대상]

■ 키움차세대작은거인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	지분증권	60%이상	○ 지분증권 및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 한다)(이하 “주식”이라 한다) ○ 위의 주식 중 시가총액 100위(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합하여 매 분기말 산정) 이내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을 “중소형주”라 한다. 다만 주식의 편입시점에는 중소형주였으나 이후 중소형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기 매입한 것은 중소형주로 본다. ○ 다만,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증권시장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하며,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는 전체 주식 편입비율의 60% 이상으로 한다.
②	채무증권	40%이하	○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③	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④	어음 등	40%이하	○ 기업어음증권 :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 ○ 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⑤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10%이하	○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⑥	집합투자증권 등	40%이하	○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⑦	환매조건부매도	50%이하	○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으로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 기준.
⑧	증권의 대여 ¹⁾	50%이하	○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 기준.
⑨	증권의 차입 ²⁾	20%이하	①내지 ④에 의한 증권의 차입
⑩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⑪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①~⑩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①~④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위의 ①~④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기타 운용방법으로 증권의 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하여 수익률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2)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해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기타 운용방법으로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모투자신탁 투자제한]

■ 키움차세대작은거인증권모투자신탁[주식] 투자제한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①이해관계인과의 거래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동일종목투자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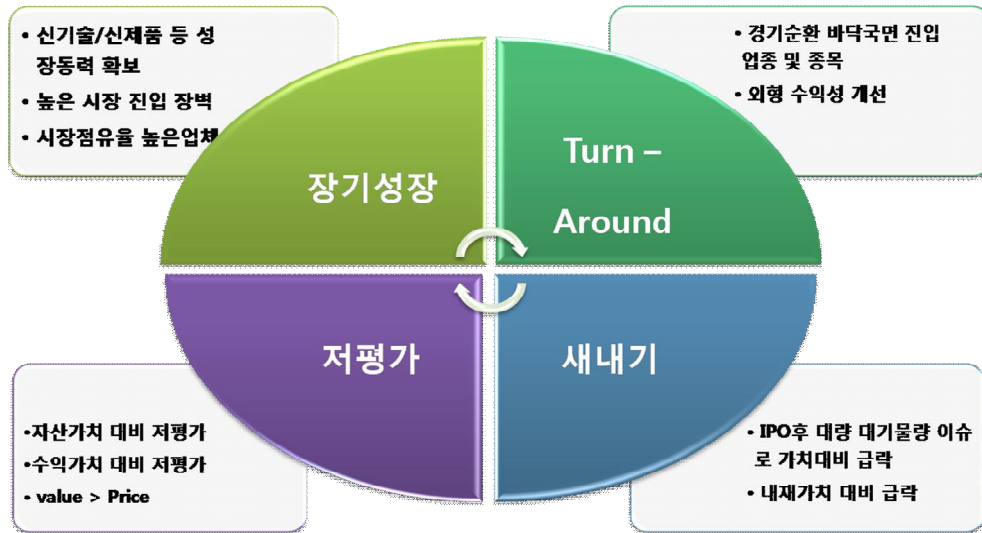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일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③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④파생상품 거래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⑤계열회사 발행 지분증권에의 투자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전체 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다.
⑥집합투자증권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제10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⑦투자한도 초과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5호 내지 제9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6호의 가목 및 라목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위의 ②, ④ 및 ⑥의 가목의 규정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1월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 모집합투자기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 이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자산의 90%이상을 키움차세대작은거인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합니다.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투자신탁 투자전략]

■ 키움차세대작은거인증권모투자신탁[주식]



①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을 저평가 수준(PER, PBR, EV/EBITDA 등 고려)에서 매입하여 장기투자하고, 『Turn-Around + 새내기 종목 + 저평가 종목』에 적극 참여하여 장기적인 자본 증식을 추구합니다.

* 시장점유율은 시장발표자료, 기업탐방, 사업보고서 등을 참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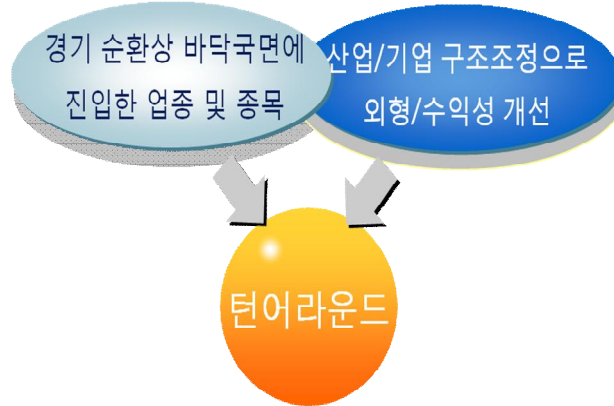
② 장기성장이 가능한 기업에 투자

- ✓ 신제품 . 신기술 등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높은 시장 진입 장벽을 확보한 기업
- ✓ 주요 제품에서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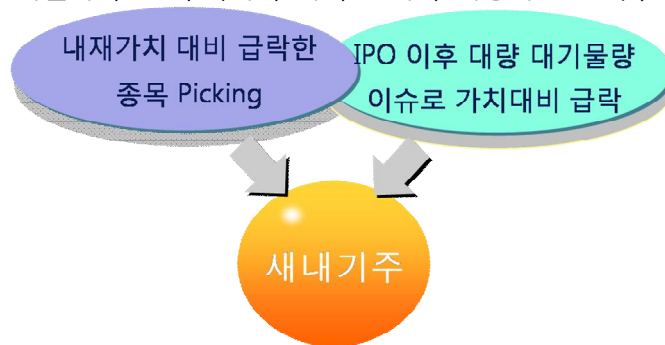
③ 업황 개선에 따라 Turn - Around 국면에 있는 업종과 종목

- ✓ 경쟁심화, 산업의 낮은 성장률로 인해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업종과 기업에 투자
- ✓ fundamental : 구조조정 후 개선된 체질을 바탕으로 수익성은 빠르게 회복되는 국면
- ✓ 주가 : 구조조정 기간의 낮은 성장성과 수익성으로 시장 평가가 인색한 국면



④ 새내기주

- ✓ IPO 이후 상당기간 주가 부진 후 제자리 찾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을 이용하는 전략
- ✓ 대량 대기물량 등 수급적 이유로 가치대비 저평가 상태의 중소형 종목 발굴
- ✓ 저PER 및 저PBR :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 대비 현저히 저평가된 소외주에 투자



<용어풀이>

* **PER(Price Earning Ratio)** : 주가수익비율, 주가를 주당순이익(earning per share:EPS)으로 나눈 주가의 수익성 지표, PER이 낮으면 이익에 비해 주가가 낮게 평가되었음을 의미.

* **PBR(Price Book-value Ratio)** : 주가순자산비율. 주가를 주당순자산가치(BPS, book value per share)로 나눈 비율로 주가와 1주당 순자산을 비교한 수치. 이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해당기업의 자산가치가 증시에서 저평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EV/EBITDA**: 기업의 시장가치(Enterprise Value ; EV)를 세전영업이익(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 EBITDA)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의 적정 주가를 판단하는데 사용. 만약 기업의 EV/EBITDA가 2배라고 한다면 해당기업의 시장가격으로 매수했을 때 그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의 2년간 합이 투자원금과 같게 된다는 것을 의미. 즉 EV/EBITDA의 수치는 투자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나타내며, 이 수치가 낮다는 것은 기업의 주가가 낮으면서(저평가됨) 영업현금흐름(영업력과 재무구조가 좋음)이 좋다는 것을 의미

<"중소형주"란?>

- 시가총액 100위(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합하여 매 분기말 산정) 이내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을 "중소형주"라 한다. 다만 주식의 편입시점에는 중소형주였으나 이후 중소형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기 매입한 것은 중소형주로 본다.

-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의 경우 그 종목의 청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기업의 공모가격에 공모주식수를 포함한 발행주식총수를 곱한 금액이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 중 100위에 해당하는 종목보다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

(2)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MKF 중소형 Price Return 지수 * 100%'를 비교지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탁재산의 60%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키움차세대작은거인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수익증권'에 90%이상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의 속성을 반영하였습니다.

- 키움차세대작은거인모투자신탁[주식] 비교지수 : MKF 중소형 Price Return 지수 * 100%

MKF 중소형 Price Return 지수 : MKF500 구성종목 중 시가총액 101위~500위 종목으로 구성되는 지수로서, 유동비율을 감안한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산출하며 해당 수익을 분배금으로 돌려주는 Price Return (PR) 지수.

- 비교지수는 시장 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최초설정일 ~ 2022년 1월 13일 : '[KOSPI × 100%]'

2022년 1월 14일 ~ 현재 : '[MKF 중소형 Price Return 지수 × 100%]'

(3) 위험관리 : 이 집합투자기구는 모집합투자기구에 위험 관리를 수행합니다. 모집합투자기구의 위험 관리 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집합투자업자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이사회가 리스크관리규정의 재·개정 건을 가지고 있으며, 지침과 펀드 유형별 운용지침 등을 두어 제반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 중요 의사결정을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 투자전략위원회, 집합투자재산평가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 독립된 리스크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펀드별 운용목적 및 전략에 부합하는 적절한 리스크 수준 설정하며 컴플라이언스 기능 강화를 통한 사전적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4) 적극적인 매매전략의 구사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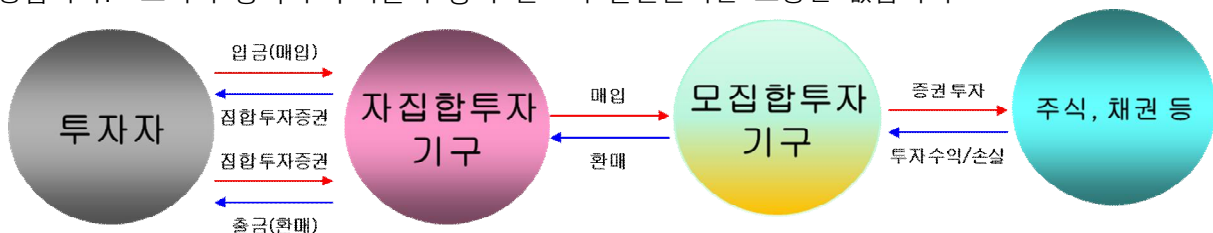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하여 수익을 추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매매전략은 그렇지 아니한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비용(매매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신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1)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시장상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 신고) 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 될 예정입니다.

나. 수익구조

- 이 집합투자기구는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키움차세대작은거인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수익증권에 90%이상 투자하는 자집합투자기구입니다. 따라서 모투자신탁이 투자한 국내 주식 및 채권 등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다음 투자위험은 작성일 기준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국내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资产的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 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서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다른 여타의 자산보다 그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투자 시에는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하여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 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资产的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업종 집중투자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한정된 투자대상, 산업섹터, 업종 또는 종목에 집중하여 투자함으로써 좀더 분산 투자된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비해 더 큰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큰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시장상황 또는 환경변화에 불리하게 영향을 받아 그 자산의 가치가 더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에 비해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새로이 기업공개가 되는 주식(이하 “공모주”라 함)은 과거거래 전례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주식보다 더 큰 가격변동성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주 물량은 한정되어 있어서 동일한 거래를 하려는 시장참여자들의 경쟁으로 충분한 물량을 취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주는 보다 유리한 가격과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매도금지 규정(Lock-up)에 종속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투자자는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 차입위험	이 투자신탁의 운용 전략에 따라 투자증권을 차입할 경우, 차입 자산을 공매도(short selling)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 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 매도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써 인해 그 차액(매도가-매수가)만큼 투자원금액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증권 대여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대여할 경우,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오류나 거래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자산의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신탁의 투자자산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투자자는 기회비용 부담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소형주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전체주식편입비율 중 60% 이상을 중소형주에 투자합니다. 중소형주는 대형주에 주로 투자하는 것보다 더 큰 위험 및 가격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중소형주의 경우 회사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 경제상황 변동의 악재 등에 더 민감하고 거래량도 급속히 감소할 수 있어 가격하락폭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고, 이로 인한 투자원금액 손실이 대형주 투자에 비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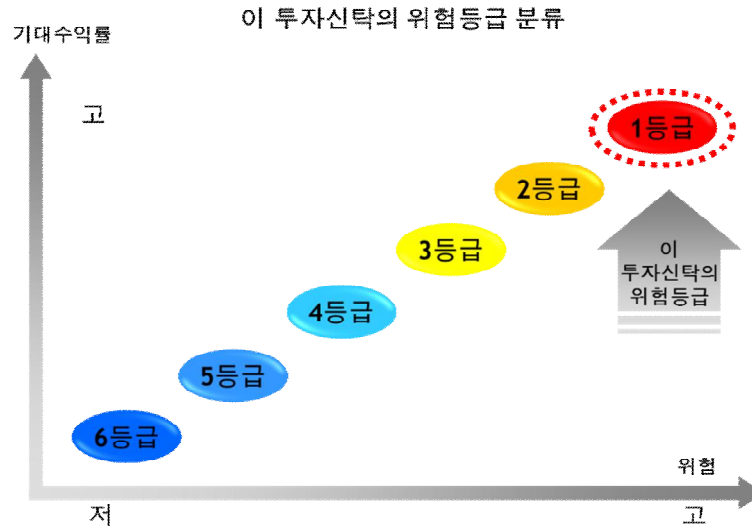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환매연기 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나. 환매'의 '(7)수익증권의 환매연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량환매 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자의 투자원금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 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임의해지 위험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소규모의 위험	투자신탁의 설정금액이 소액이거나, 환매 등에 의해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분산투자 등 원활한 펀드 운용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 위험	이 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서 보유증권에 대하여 재량권을 가지고 의결권이나 매수청구권 등 기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 결과가 집합투자재산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상배당 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에 대하여 배당락 기준으로 각 종목별 예상배당액을 추정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반영합니다. 이 때 예상 배당금액은 추후 주주총회에서 확정되는 실제 배당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확정된 실제 배당금액이 예상 배당금액 보다 적어질 경우 투자신탁의 가치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래중지 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은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 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증권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오류 위험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사, 판매회사 등 관련 기관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법에서 정한 오차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가 산정 오류가 이러한 오차범위 이내에서 발생한 경우 당해 투자신탁을 청약하거나 환매한 투자자, 기존투자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경제적 가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운용 프로세스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적으로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집합투자업자에게 부여된 임의재량에 의한 투자활동의 결과는 집합투자업자의 능력에 좌우되고 특히 적절한 투자기회를 식별하고 성공적으로 투자전략을 이행하는 펀드매니저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펀드매니저는 당해 투자신탁뿐만 아니라 다수의 다른 투자신탁의 운용을 담당할 수 있고 또한 담당 펀드매니저의 퇴직 등으로 신탁계약기간 도중에 담당 펀드매니저가 변경될 위험이 있습니다.
증권대차 거래위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62.16%로 **6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매우 높은 위험)**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여 주식투자의 기본숙성에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주식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최직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간 일간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위험 등급 기준(97.5% VaR 모형* 사용)>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분류기준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97.5% VaR	50% 초과	50% 이하	30% 이하	20% 이하	10% 이하	1%이하

*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

* VaR(Value at Risk)는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 측정을 위해 이용되는 위험 측정수단입니다. 상기 표상 VaR값 00%의 의미는 펀드의 과거 3년 동안 일간수익률을 고려 시 최대 00%의 손실(신뢰구간 97.5%)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1)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매우 높은 위험 수준(1등급)부터 매우 낮은 위험 수준(6등급)까지 6단계로 펀드의 위험수준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의 분류기준에 의한 등급으로,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위험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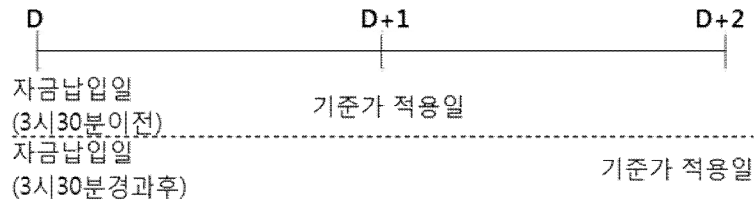
(1) 매입방법

-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가) 오후 3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라) 종류별 가입 요건

- 이 투자신탁의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최초설정일	가입자격
수수료선회-오프라인 (A)	2011.03.31	가입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	2011.03.31	가입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징구하지 않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2)	2012.04.03	Class C1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3)	2013.04.02	Class C2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4)	2014.04.01	Class C3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2011.03.31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고,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미설정	판매회사의 랩어카운트 계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C-I)	미설정	최초 납입금액이 20억 이상인 법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미설정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법 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따른 금전신탁, 보험업법 제 108 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
수수료선회-온라인 (A-e)	2014.06.11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며,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수수료후회-온라인슈퍼 (S)	2014.06.25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한 자 (후취판매수수료 징구)
수수료선회-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미설정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한 자(선취판매수수료 징구)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미설정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	미설정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e)	미설정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이용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2(퇴직연금))	미설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2e(퇴직연금))	미설정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이용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	미설정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S-T 및 S-P 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퇴직연금))	미설정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S-T 및 S-P 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는 제외)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나. 환매

중도환매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 허용 (중도환매시 비용 발생)	중도환매 허용 (중도환매시 비용 발생하지 않음)
-	-	○

(1) 수익증권의 환매

-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 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수익자에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5시 30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 30분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하며,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에 의해 기준시점이 결정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자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①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다. 대량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④ 그밖에 ①부터 ③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장기투자자에 따른 클래스 자동전환)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① Class C1 수익증권을 가입한 투자자는 1년 이상 경과시마다 Class C2 → Class C3 → Class C4로 자동 전환됩니다. (전환일 당일의 기준가격으로 전환)

② Class C2, Class C3, Class C4의 경우에는 최초 가입이 불가능한 클래스로 Class C1으로만 최초가입이 가능합니다.

- 전환하는 경우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하되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 전환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따른 환매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환매청구에 대한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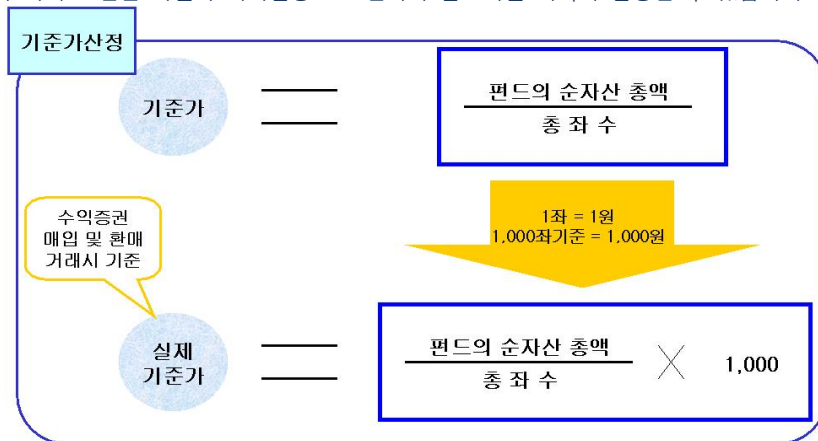
- 전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 발표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공고·게시일 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펀드 간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 • 판매회사·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①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 ③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 구성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등
- 업무 :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대한 필요사항을 의결함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①-2 외화표시유가증권인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전일의 최종시가 또는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② 비상장 주식	취득가. 다만, 취득가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방법을 결정.
③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해외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전일의 가격)
④ 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⑤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⑥ 비상장채권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⑤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⑦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⑧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⑨ 파생결합증권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의 평균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파생결합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Class)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	후취판매	환매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가입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징구	납입금액의 1.0% 이내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	가입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징구하지 않음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2)	Class C1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lass C2 수익증권을 1년 이상	-	-	

키움차세대작은거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프라임-보수채감 (C3)	보유한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채감 (C4)	Class C3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웹 (C-W)	판매회사의 웹어카운트 계좌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C-I)	최초 납입금액이 20억 이상인 법인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법 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따른 금전신탁, 보험업법 제 108 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	-	-	
수수료선취-온라인 (A-e)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며,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납입금액의 0.50% 이내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한 자 (후취판매수수료 징구)	-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한 자(선취판매수수료 징구)	납입금액의 0.75% 이내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한 자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이용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투자자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2(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2e(퇴직연금))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를 이용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S-T 및 S-P 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	-	

키움차세대작은거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퇴직연금))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S-T 및 S-P 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는 제외)	-	-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주1) 선취판매수수료 및 후취판매수수료는 판매수수료를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클래스	지급비율 (연간, %)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총보수	동종유형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합성 총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증권거래비용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0.7000	0.7000	0.0300	0.0150	1.4450	1.38	0.0206	1.4656	1.4657	0.197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	0.7000	1.4000	0.0300	0.0150	2.1450	1.60	0.0000	2.1450	2.1451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2)	0.7000	1.0000	0.0300	0.0150	1.7450	1.60	0.0000	1.7450	1.7451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3)	0.7000	0.8500	0.0300	0.0150	1.5950	1.60	0.0000	1.5950	1.5951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4)	0.7000	0.7500	0.0300	0.0150	1.4950	1.60	0.0206	1.5156	1.5157	0.1973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0.7000	0.5000	0.0300	0.0150	1.2450	1.10	0.0193	1.2643	1.2644	0.176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0.7000	0.0000	0.0300	0.0150	0.7450	-	0.0000	0.7450	0.7451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C-I)	0.7000	0.2000	0.0300	0.0150	0.9450	-	0.0000	0.9450	0.9451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0.7000	0.0300	0.0300	0.0150	0.7750	-	0.0000	0.7750	0.7751	0.0000
수수료선취-온라인 (A-e)	0.7000	0.3500	0.0300	0.0150	1.0950	1.05	0.0193	1.1143	1.1144	0.1932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0.7000	0.3500	0.0300	0.0150	1.0950	-	0.0193	1.1143	1.1144	0.1886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	0.7000	0.5000	0.0300	0.0150	1.2450	-	0.0000	1.2450	1.2451	0.0000

키움차세대작은거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저비용 (A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0.7000	0.7400	0.0300	0.0150	1.4850	-	0.0000	1.4850	1.4851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	0.7000	0.6000	0.0300	0.0150	1.3450	-	0.0000	1.3450	1.3451	0.0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e)	0.7000	0.3000	0.0300	0.0150	1.0450	-	0.0000	1.0450	1.0451	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2(퇴직연금))	0.7000	0.4200	0.0300	0.0150	1.1650	-	0.0000	1.1650	1.1651	0.0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2e(퇴직연금))	0.7000	0.2100	0.0300	0.0150	0.9550	-	0.0000	0.9550	0.9551	0.0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	0.7000	0.1800	0.0300	0.0150	0.9250	-	0.0000	0.9250	0.9251	0.0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퇴직연금))	0.7000	0.1700	0.0300	0.0150	0.9150	-	0.0000	0.9150	0.9151	0.0000
지급시기	매3개월/사유발생시	매3개월/사유발생시	매3개월/사유발생시	매3개월/사유발생시	매3개월/사유발생시	-	사유발생시	매3개월/사유발생시	매3개월/사유발생시	사유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 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예탁원결제비용, 채권평가비용, 부동산감정평가비용, 감사비용, 펀드평가비용, 지수사용료 등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25.03.31 ~ 2026.03.31]

주2) 증권거래비용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장 또는 등록주식 매매수수료, 장내파생상품 매매수수료, 장외파생상품 매매수수료, 현금 중개수수료, 대차 또는 대주, Repo 거래 중개수수료, 해외자산(주식, 채권, 선물, 장외파생, 기타 Forward 매매수수료) 등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25.03.31 ~ 2026.03.31]

주3) 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차입금이자비용, 현금담보이자비용 등 기타 이자비용
금융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금융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계산이 가능한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투자신탁이거나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 신탁인 경우 금액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4) 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한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발행분담금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회계기간 중 해당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회계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직전 회계연도의 발생비용을 기재할 예정입니다.

(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증권거래비용	43,084
금융비용	0
발행분담금	0

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키움차세대작은거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주6) 모투자신탁의 보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및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가 없습니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및 제공비용을 제외한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비용 등은 이 투자신탁과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7)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8)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연평잔액(보수·비용차감 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발생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9) 미설정된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추정할 수 없어 기재하지 않았으나 당해 종류 수익증권이 설정된 후에는 해당 회계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직전 회계연도의 발생비용을 기재할 예정입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

(단위 : 천원)

클래스 (종류)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48	404	568	921	1,970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248	404	568	921	1,97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20	408	588	957	2,052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220	408	588	957	2,05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79	351	522	891	1,986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79	351	522	891	1,98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64	327	498	867	1,962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64	327	498	867	1,96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55	319	490	858	1,954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55	319	490	859	1,954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30	266	409	716	1,630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30	266	409	716	1,63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6	157	241	422	961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76	157	241	422	96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C-I)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7	199	305	535	1,218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97	199	305	535	1,21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9	163	250	439	999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79	163	250	439	999
수수료선취-온라인 (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63	283	408	678	1,479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63	283	408	678	1,479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4	234	360	631	1,437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14	234	360	631	1,437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AG)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01	334	474	774	1,668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201	334	474	774	1,66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52	312	480	841	1,915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52	312	480	841	1,91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38	283	435	762	1,734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38	283	435	762	1,734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C-P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7	220	338	592	1,347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07	220	338	592	1,34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9	245	376	660	1,502

퇴직연금 (C-P2(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19	245	377	660	1,50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2e(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8	201	309	541	1,231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98	201	309	541	1,231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5	194	299	524	1,193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95	194	299	524	1,193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4	192	296	518	1,180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94	192	296	518	1,180

- 주1) 수익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기타비용 포함)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2) 종류별로(A1, C1-C2-C3-C4)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년 10개월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또는 보수변경 등에 따라 일치하는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3) Class A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1.0%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다를 수 있으나, 상기에서는 납입금액의 1.0%를 선취판매수수료로 부과하는 경우를 예시하였습니다.
- 주4) Class A-E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0.5%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다를 수 있으나, 상기에서는 납입금액의 0.5%를 선취판매수수료로 부과하는 경우를 예시하였습니다.
- 주5) Class AG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의 0.75%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다를 수 있으나, 상기에서는 납입금액의 0.75%를 선취판매수수료로 부과하는 경우를 예시하였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일 다음 영업일에 분배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매매이익

※ 투자신탁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2017년 2월 3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투자신탁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이익분배금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매수

-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집합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상환금 등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등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인 자투자신탁 전원의 동의와 관련 자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 따라 당해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자투자신탁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 수익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양도(전자증권법 제 30 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함)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소득세율 38%, 주민세 3.8%)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Class C-P, C-Pe, S-P 수익증권 가입자에 한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 년 이상, 연 1,800 만원 한도(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키움차세대작은거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수령요건	55 세 이후 10 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납입금액] -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중 적은 금액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공제 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 (나이에 따라 변경)
분리과세한도	연 1,500만원 (공적연금소득, 연금수령 이연퇴직소득,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제외) 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과세 또는 16.5%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함. (단, 분리과세선택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적용)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으로 3.3 ~ 5.5%(분리과세)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해지가산세	없음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구분	'13.3.1 전 가입자
해지가산세	5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2.2% [면제사유] • 천재지변 • 저축자의 사망, 퇴직, 해외이주, 폐업 • 저축자의 3개월 이상 치료·요양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주 1) 이연퇴직소득과 관련한 사항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Class C-P2(퇴직연금), C-P2e(퇴직연금), S-P2(퇴직연금) 수익증권 가입자

-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② 과세이연

-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로 인한 이익분배금의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령 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 수령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체계가 결정됩니다.
 - *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선택 가능하며, 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과세 또는 16.5%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합니다. (단, 분리과세선택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 연금세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통합연금포털 (<https://100lifeplan.fss.or.kr>)의 '연금세제안내'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가격: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투자원금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과표기준가격: 펀드의 투자원금에 과세대상자산("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참조)에서 발생한 운용성과만을 더하거나 차감하여 계산된 것으로서, 환매 또는 이익분배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은 비과세대상자산("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참조)에서 발생한 손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투자손익이 (-)손실인 경우에도 수익자는 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15기 (2025.03.31 ~ 2026.03.30)	삼덕회계법인	확정 전
제14기 (2024.03.31 ~ 2025.03.30)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13기 (2023.03.31 ~ 2024.03.30)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1)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

재무상태표			
항 목	제 15 기	제14기	제13기
	(2026.03.30)	(2025.03.30)	(2024.03.30)
운용자산	32,847,222,467	15,713,484,146	16,771,881,504
증권	32,799,850,283	15,661,815,380	16,766,753,798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47,372,184	51,668,766	5,127,706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102,730,688	97,641	12,457
자산총계	32,949,953,155	15,713,581,787	16,771,893,961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602,819	0	0
부채총계	602,819	0	0
원본	10,621,854,200	10,576,266,245	10,585,060,339
수익조정금	27,650,190	11,714,181	-37,748,662
이익잉여금	22,299,845,946	5,125,601,361	6,224,582,284
자본총계	32,949,350,336	15,713,581,787	16,771,893,961

손익계산서			
항 목	제 15 기	제14기	제13기
	(2025.03.31 ~ 2026.03.30)	(2024.03.31 ~ 2025.03.30)	(2023.03.31 ~ 2024.03.30)
운용수익	21,353,976,047	4,300,957,414	5,465,107,052
이자수익	1,002,470	800,620	217,535
배당수익	231,572,307	238,548,052	230,284,155
매매/평가차익(손)	21,121,401,270	4,061,608,742	5,234,605,362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0	0	0
관련회사 보수	0	0	0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550,000	0	0
당기순이익	21,353,426,047	4,300,957,414	5,465,107,052

키움차세대작은거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매매회전율	0	0	0
-------	---	---	---

-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가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가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연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 주2) 상기의 요약 재무제표 및 정식 재무제표의 경우 작성 기준일은 동일하나, 상기의 요약 재무제표는 결산이 확정된 것이 아닌 결산시 이익분배금등을 감안하여 작성한 것이며, 정식 재무제표의 경우 결산 후 이익분배금을 포함한 모든 손익을 확정지어 회계 감사용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계정항목이나, 합계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주3)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정식 재무제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4) 주식의 매매회전을 산출과 관련하여 주식 매수·매도 금액, 보유주식의 평균가액,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등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주]

<주식의 매매회전율>						
주식매수		주식매도		당해연도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 (A/B)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784,080	10,653.30	654,047	12,203.33	21,581.10	56.55	32.09

(*)동종유형이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및 일반 공모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여 자본시장법 제229조에 따른 5가지 종류의 유형(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제외)을 의미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자투자신탁인 경우 해당 수치는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라 가중치로 안분하여 산출한 수치입니다.

주5) 이 투자신탁은 기타 운용방법으로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거래가 가능하며 상기의 요약 손익계산서상 기타수익과 기타비용에는 증권대차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이 다음과 같이 포함·구성되어 있습니다.

- 기타수익 :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15기 0백만원, 14기 0백만원, 13기 0백만원 발생)

- 기타비용 :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15기 0백만원, 14기 0백만원, 13기 0백만원 발생)

(*)이 투자신탁이 자투자신탁인 경우 해당 수치는 상기 손익계산서상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라 가중치로 안분하여 산출한 수치입니다.

주6)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거래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구분	당해 연도			전년도		
	거래금액(A)	거래비용		거래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22,856.51	23.61	0.10	9,461.39	10.68	0.11
주식 이외의 증권(채권 등)	0.00	0.00	0.00	0.00	0.00	0.00
부동산	0.00	0.00	0.00	0.00	0.00	0.00
장내파생상품	0.00	0.00	0.00	0.00	0.00	0.00
장외파생상품	0.00	0.00	0.00	0.00	0.00	0.00
합계	22,856.51	23.61	0.10	9,461.39	10.68	0.11

(*)장외 채권거래와 같이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렵거나 부동산 등과 같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수익적지출 등 비용으로 산정되는 항목은 기재)은 제외하였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자투자신탁인 경우 해당 수치는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비율에 따라 가중치로 안분하여 산출한 수치입니다.

2) 재무상태표

(단위: 원)

과목	제15기(2026.03.30)		제14기(2025.03.30)		제13기(2024.03.30)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47,372,184		51,668,766		5,127,706
1. 현금및현금성자산	47,372,184		51,668,766		5,127,706	
2. 예치금	0		0		0	
3. 증거금	0		0		0	
대출채권		0		0		0
1. 콜론	0		0		0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0		0		0	
3. 매입어음	0		0		0	
4. 대출금	0		0		0	
유가증권		32,799,850,283		15,661,815,380		16,766,753,798
1. 지분증권	0		0		0	
2. 채무증권	0		0		0	
3. 수익증권	32,799,850,283		15,661,815,380		16,766,753,798	
4. 기타유가증권	0		0		0	
파생상품		0		0		0
1. 파생상품	0		0		0	
부동산과 실물자산		0		0		0
1. 건물	0		0		0	
2. 토지	0		0		0	
3. 농산물	0		0		0	
4. 축산물	0		0		0	
기타운용자산		0		0		0
1. 임차권	0		0		0	
2. 전세권	0		0		0	
기 타 자 산		102,730,688		97,641		12,457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102,650,515		0		0	
2. 정산미수금	0		0		0	
3. 미수이자	80,173		97,641		12,457	
4. 미수배당금	0		0		0	
5. 기타미수입금	0		0		0	
6. 기타자산	0		0		0	
7. 수익증권청약금	0		0		0	
자 산 총 계		32,949,953,155		15,713,581,787		16,771,893,961
부 채						
운 용 부 채		0		0		0
1. 파생상품	0		0		0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0		0		0	
3. 기타운용부채	0		0		0	
기 타 부 채		602,819		0		0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0		0		0	
2. 정산미지급금	0		0		0	
3. 해지미지급금	52,819		0		0	
4. 수수료미지급금	550,000		0		0	
5. 미지급이익분배금	0		0		0	
6. 기타미지급금	0		0		0	
부 채 총 계		602,819		0		0
자 본						
1. 원 본	10,621,854,200		10,576,266,245		10,585,060,339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27,650,190		11,714,181		-37,748,662	
3. 이월잉여금	22,299,845,946		5,125,601,361		6,224,582,284	
(발행좌수 당기: 10,621,854,200 차	이익잉여금	22,299,845,946		5,125,601,361		6,224,582,284
전기: 10,576,266,245 차	수익조정금	0		0		0
전전기: 10,585,060,339 차)						
(기준가격 당기: 3,102.03 원						
전기: 1,485.74 원						
전전기: 1,584.49 원)						
자 본 총 계		32,949,350,336		15,713,581,787		16,771,893,961
부 채 와 자 본 총 계		32,949,953,155		15,713,581,787		16,771,893,961

3) 손익계산서

(단위: 원)

과 목	제 15기(2025.03.31 ~ 2026.03.30)		제 14기(2024.03.31 ~ 2025.03.30)		제 13기(2023.03.31 ~ 2024.03.30)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232,574,777		239,348,672		230,501,690
1. 이 자 수 익	1,002,470		800,620		217,535	
2. 배당금수익	231,572,307		238,548,052		230,284,155	
3. 수수료수익	0		0		0	
4. 기타투자수익	0		0		0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21,121,401,270		4,061,608,742		5,234,605,362
1. 지분증권매매/평가차익	0		0		0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0		0		0	
3. 수익증권매매/평가차익	21,121,401,270		4,061,608,742		5,234,605,362	
4. 현금및대체증권매매/평가차익	0		0		0	
5.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0		0		0	
6. 외환거래/평가차익	0		0		0	
7. 기타차익	0		0		0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0		0		0
1. 지분증권매매/평가차손	0		0		0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0		0		0	
3. 수익증권매매/평가차손	0		0		0	
4. 현금및대체증권매매/평가차손	0		0		0	
5.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0		0		0	
6. 외환거래/평가차손	0		0		0	
7. 기타차손	0		0		0	
운 용 비 용		550,000		0		0
1. 운용수수료	0		0		0	
2. 판매수수료	0		0		0	
3. 수탁수수료	0		0		0	
4. 사무수탁수수료	0		0		0	
5. 지급수수료	550,000		0		0	
6. 기타비용	0		0		0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21,353,426,047		4,300,957,414		5,465,107,052
좌달순이익(또는 좌달순손실)		2		0		1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 억좌, 억원)

가. 키움차세대작은거인증권자투자신탁 1 호[주식]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재투자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5.03.31 ~ 2026.03.30	105.76	154.74	2.46	4.43	2.00	3.65	106.22	327.17	0.00
2024.03.31 ~ 2025.03.30	105.85	165.41	2.10	3.33	2.19	3.31	105.76	154.74	0.00
2023.03.31 ~ 2024.03.30	106.35	149.32	1.93	2.73	2.43	3.64	105.85	165.41	0.00

나. 키움차세대작은거인증권자투자신탁 1 호[주식]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재투자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5.03.31 ~ 2026.03.30	49.19	66.01	0.01	0.01	0.00	0.00	49.19	138.11	0.00
2024.03.31 ~ 2025.03.30	49.35	70.68	0.00	0.00	0.16	0.22	49.19	66.01	0.00
2023.03.31 ~ 2024.03.30	49.35	63.52	0.00	0.00	0.00	0.00	49.35	70.68	0.00

다. 키움차세대작은거인증권자투자신탁 1 호[주식]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 (C4)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재투자 금액
		설정(발행)	환매		

키움차세대작은거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2025.03.31 ~ 2026.03.30	67.17	89.36	0.00	0.00	0.06	0.09	67.11	186.67	0.00
2024.03.31 ~ 2025.03.30	67.17	95.42	0.00	0.00	0.00	0.00	67.17	89.36	0.00
2023.03.31 ~ 2024.03.30	67.17	85.79	0.00	0.00	0.00	0.00	67.17	95.42	0.00

라. 키움차세대작은거인증권자투자신탁 1 호[주식]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재투자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2025.03.31 ~ 2026.03.30	0.43	0.59	0.49	1.14	0.24	0.41	0.68	1.95	0.00
2024.03.31 ~ 2025.03.30	0.47	0.68	0.23	0.37	0.27	0.34	0.43	0.59	0.00
2023.03.31 ~ 2024.03.30	0.66	0.86	0.07	0.10	0.27	0.37	0.47	0.68	0.00

마. 키움차세대작은거인증권자투자신탁 1 호[주식] 수수료선취-온라인 (A-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재투자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5.03.31 ~ 2026.03.30	0.35	0.49	0.37	0.86	0.21	0.37	0.52	1.52	0.00
2024.03.31 ~ 2025.03.30	0.18	0.27	0.33	0.48	0.16	0.22	0.35	0.49	0.00
2023.03.31 ~ 2024.03.30	0.66	0.88	0.20	0.28	0.68	1.00	0.18	0.27	0.00

바. 키움차세대작은거인증권자투자신탁 1 호[주식]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재투자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2025.03.31 ~ 2026.03.30	0.08	0.11	0.02	0.03	0.03	0.05	0.06	0.17	0.00
2024.03.31 ~ 2025.03.30	0.06	0.09	0.05	0.08	0.03	0.04	0.08	0.11	0.00
2023.03.31 ~ 2024.03.30	0.06	0.08	0.01	0.02	0.02	0.02	0.06	0.09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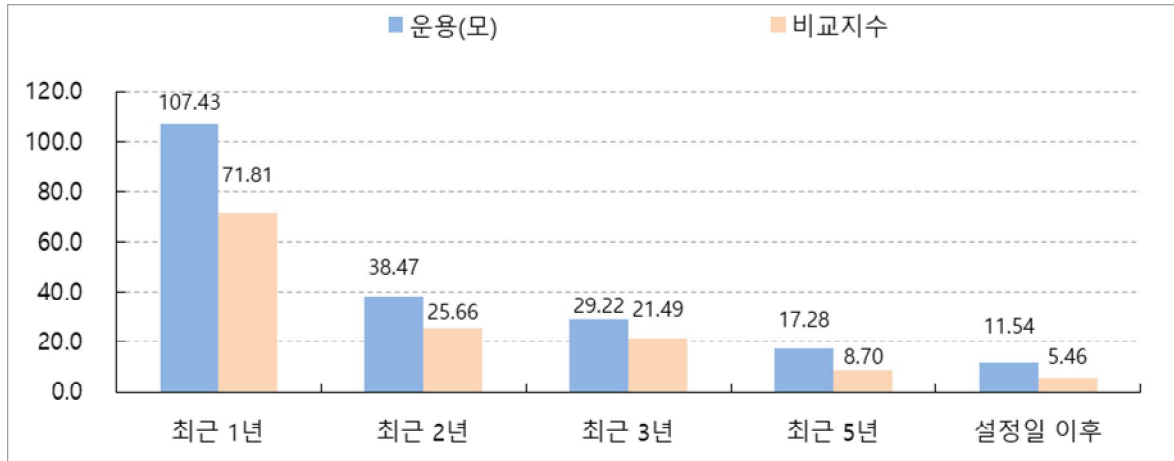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 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하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평균수익률(세전기준)

(단위: %)



기간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25.04.01~ 2026.03.31	2024.04.01~ 2026.03.31	2023.04.01~ 2026.03.31	2021.04.01~ 2026.03.31	2011.03.31~ 2026.03.31
운용(모)	2011.03.31	107.43	38.47	29.22	17.28	11.54
비교지수		71.81	25.66	21.49	8.70	5.46
수익률 변동성	2011.03.31	29.91	27.91	25.56	23.81	22.17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104.68	36.55	27.43	15.62	9.90
비교지수	2014.04.01	71.81	25.66	21.49	8.70	5.4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 체감 (C4)		104.58	36.49	27.37	15.56	10.20
비교지수	2011.03.31	71.81	25.66	21.49	8.70	5.46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105.04	36.81	27.67	15.84	10.05
비교지수	2014.06.11	71.81	25.66	21.49	8.70	5.46
수수료선취-온라인 (A-e)		105.34	37.02	27.86	16.02	10.82
비교지수	2014.06.25	71.81	25.66	21.49	8.70	5.46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105.34	37.01	27.86	16.02	10.82
비교지수		71.81	25.66	21.49	8.70	7.45

주1) 비교지수: KOSPI 100%

* 2022년 1월 14일부터는 [MKF 중소형 Price Return 지수 * 100%]가 비교지수로 적용됩니다.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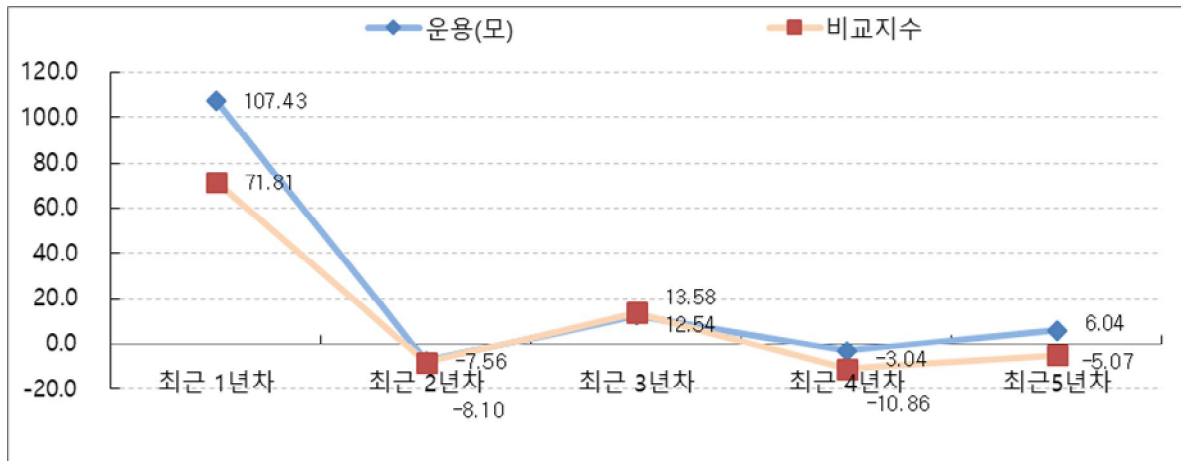
주4) 본 수익률은 과세전 기준이며, 신고서(또는 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5)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연도별수익률(세전기준)

(단위: %)

키움차세대작은거인증권투자신탁1호[주식]



기간	설정일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025.04.01~ 2026.03.31	2024.04.01~ 2025.03.31	2023.04.01~ 2024.03.31	2022.04.01~ 2023.03.31	2021.04.01~ 2022.03.31
운용(모)	2011.03.31	107.43	-7.56	12.54	-3.04	6.04
비교지수		71.81	-8.10	13.58	-10.86	-5.07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2011.03.31	104.68	-8.90	10.97	-4.51	4.55
비교지수		71.81	-8.10	13.58	-10.86	-5.0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 체감 (C4)	2014.04.01	104.58	-8.94	10.92	-4.56	4.50
비교지수		71.81	-8.10	13.58	-10.86	-5.07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2011.03.31	105.04	-8.72	11.19	-4.31	4.76
비교지수		71.81	-8.10	13.58	-10.86	-5.07
수수료선취-온라인 (A-e)	2014.06.11	105.34	-8.57	11.35	-4.16	4.91
비교지수		71.81	-8.10	13.58	-10.86	-5.07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2014.06.25	105.34	-8.58	11.35	-4.16	4.91
비교지수		71.81	-8.10	13.58	-10.86	-5.07

주1) 비교지수: KOSPI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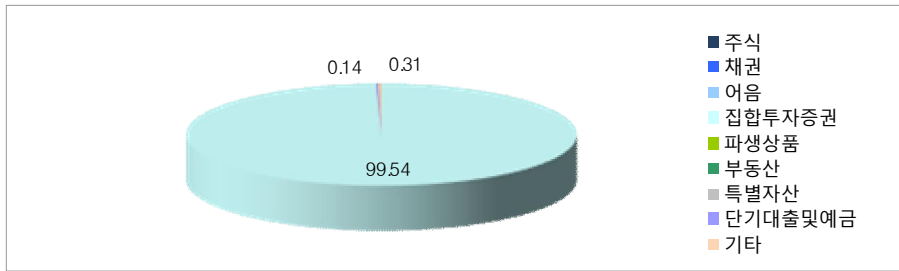
* 2022년 1월 14일부터는 [MKF 중소형 Price Return 지수 * 100%]가 비교지수로 적용됩니다.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본 수익률은 과세전 기준이며, 신고서(또는 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3) 투자신탁의 자산 구성 현황



[2026.03.30 현재 / 단위 : 억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합계	0.0	0.0	0.0	328.0	0.0	0.0	0.0	0.0	0.0	0.5	1.0	329.5
	(0.00)	(0.00)	(0.00)	(99.54)	(0.00)	(0.00)	(0.00)	(0.00)	(0.00)	(0.14)	(0.31)	(100.00)
KRW	0.0	0.0	0.0	328.0	0.0	0.0	0.0	0.0	0.0	0.5	1.0	329.5
	(0.00)	(0.00)	(0.00)	(99.54)	(0.00)	(0.00)	(0.00)	(0.00)	(0.00)	(0.14)	(0.31)	(100.00)

주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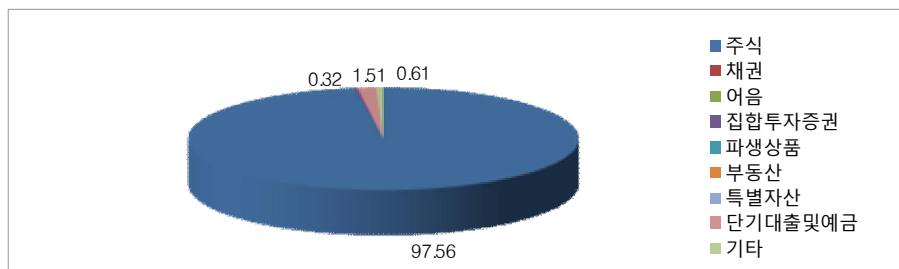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5) 상기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비중은 모투자신탁 '키움차세대작은거인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한 비중을 나타냅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모투자신탁의 자산 구성 현황>

◆ 키움차세대작은거인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26.03.30 현재 / 단위 : 억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합계	336.2	0.0	0.0	1.1	0.0	0.0	0.0	0.0	0.0	5.2	2.1	344.6
	(97.56)	(0.00)	(0.00)	(0.32)	(0.00)	(0.00)	(0.00)	(0.00)	(0.00)	(1.51)	(0.61)	(100.00)
KRW	336.2	0.0	0.0	1.1	0.0	0.0	0.0	0.0	0.0	5.2	2.1	344.6
	(97.56)	(0.00)	(0.00)	(0.32)	(0.00)	(0.00)	(0.00)	(0.00)	(0.00)	(1.51)	(0.61)	(100.00)

주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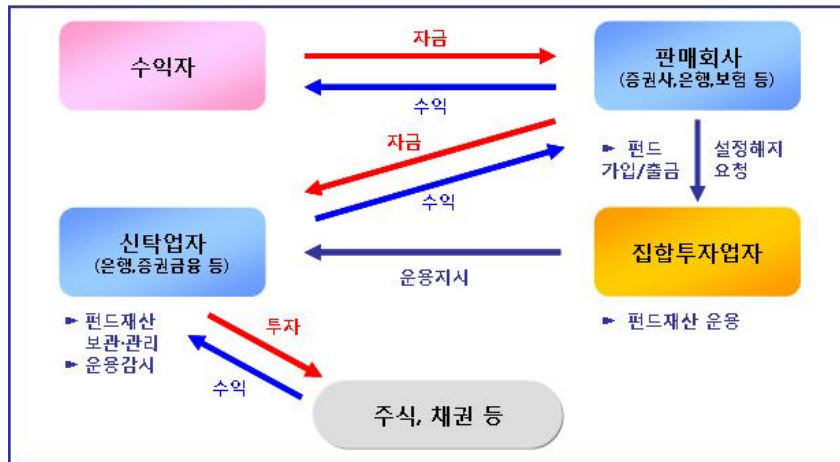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4) 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자산 구성 현황

- | | |
|-------------------------|---------|
| ① 국내 채권종류별 구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 ② 국내 채권신용평가등급별 구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 ③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국가별 구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 ④ 국내 주식 업종 별 구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 ⑤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통화별 구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 ⑥ 국내 파생상품별 구성현황 | 해당사항 없음 |
| ⑦ 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TP타워 12층 (연락처: 02) 789-0300 / www.kiwoomam.com)
회사연혁	1988.03 럭키투자자문주식회사 설립 1990.09 미국 SEC 투자자문업 등록 1995.02 LG투자자문주식회사로 상호변경 1996.07 LG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로 상호변경 및 업종 전환 1997.04 투자자문 일임업 허가 2004.12 우리금융그룹 계열사로 편입 2005.06 우리자산운용 출범 LG투자신탁운용, 우리투자신탁운용 양사 합병. 자본금 491억 2005.09 자본금 감자(총 491억 ⇒ 333억) 2006.06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 출범 Credit Suisse사와 합작 2009.05 우리자산운용 사명변경 2014.12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출범 (우리자산운용과 키움자산운용의 합병) 2025.12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 집합투자업 사업부문 분할합병
자본금	810억원
주요주주현황	키움증권

나. 주요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의무 및 책임

[선관의무]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3)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억 원)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구분	제38(당)기 2025.12.31현재	제37(전)기 2024.12.31현재	구분	제38(당)기 2025.01.01 ~ 2025.12.31	제37(전)기 2024.01.01 ~ 2024.12.31
현금 및 예치금	29	67	영업수익	1,251	858
증권	2,231	2,245	영업비용	751	630
파생상품자산	-	-	영업이익	500	229
대출채권	36	42	영업외수익	176	84
유형자산	16	22	영업외비용	79	88
사용권자산	91	118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597	225
기타자산	325	365	법인세비용	135	48
자산총계	2,728	2,858	당기순이익	462	176
예수부채	7	3	기타포괄손익	-	-
리스부채	90	114	총포괄손익	462	176
기타부채	282	182			
파생상품	-	-			
부채총계	378	300			
자본금	710	710			
자본잉여금	171	171			
이익잉여금	1,469	1,678			
자본조정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자본총계	2,350	2,559			
부채 및 자본총계	2,728	2,858			

4) 운용자산규모

[2026.09.06 현재 / 단위 :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 및 부동산 파생	특별자산 및 특별자산 파생	혼합자산 및 혼합자산 파생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재간접형	파생형					
수탁고	34,875	86,314	4,873	97,146	18,115	52,228	34,755	11,267	125,619	465,191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1) 회사개요

회사명	(주)신한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중구 세종대로 9길 20 (태평로2가, 대경빌딩) (연락처: (02) 756-0505)
홈페이지	http://www.shinhan.com/

(2)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의무와 책임

[의무]

- 신탁업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계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1. 투자설명서가 법령, 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3.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4. 운용지시에 대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5.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책임]

-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개요

회사명	우리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60길 17 (연락처: (02) 3151-3500)
홈페이지	www.woorifs.co.kr

(2) 주요업무

① 주요업무

-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투자신탁재산을 평가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 집합투자업자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②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는 관련법령 및 그 하위규정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관련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인터넷 홈페이지주소
한국자산평가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곡로 88 - 연락처: (02) 2251-1300 - 홈페이지: www.koreaap.com
NICE피앤아이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 연락처: (02) 398-3900 - 홈페이지: www.nicepni.com
KIS채권평가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 연락처: (02) 3215-1400 - 홈페이지: www.bond.co.kr
에프앤자산평가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 연락처: (02) 721-5300 - 홈페이지: www.fnpricing.com
이지자산평가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3층 (여의도동, CCMM빌딩) - 연락처: (02) 785-1410 - 홈페이지: www.egap.co.kr

(2) 주요업무

① 주요업무

-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② 의무와 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 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 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 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관련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에서 의결된 찬반비율에 비례하여 자투자신탁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 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각 자투자신탁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자투자신탁 수익자들의 의결권 행사 내용에 비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 수익자에게 법시행령 제 221 조제 6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일 것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 221 조제 7 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 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8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관련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및 법시행령 제245 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 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5.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반대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이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시행령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손해배상의 주체)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 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 6 조제 6 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다. 임의해지 절차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나. 임의해지에'서 투자신탁본이 50 억원에 미달하여 임의해지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①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투자신탁의 설정현황
- 2)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법 제 87 조제 8 항제 1 호·제 2 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4)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②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①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②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 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③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 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 개월마다 1 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계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2)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6 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및 법시행령 제 245 조 제 5 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 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7)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의 변경
 -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 (www.kiwoomam.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합니다)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투자설명서의 변경(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투자신탁이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가. 법 시행령 제242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법 제 87 조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라 주요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 월 30 일까지 직전 연도 4 월 1 일부터 1 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구분	선정 기준	
증권	주식 및 인덱스	정보제공 및 주문집행 능력, 자산분석서비스의 유용성을 기준으로 투자중개업자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투자중개업자별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매매수수료를 배분
	채권	리서치, 거래능력, 중개사 리스크, 백오피스 업무의 신속성/정확도, 매매체결 오류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투자중개업자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투자중개업자별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배분
장내파생상품	증권의 거래와 유사	

주1) 해외 위탁운용사에 위탁하는 자산의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중개회사 선정은 해당 위탁운용사의 내부 기준에 따릅니다

주2) 각 항목별 평가항목 등은 관련 법규 또는 당사 내부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임] 용어풀이

용 어	내 용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집합투자	2인이상의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자금으로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주된 투자대상 자산	집합투자계약의 투자목적에 당해 집합투자기구가 주로 투자하는 자산으로 명시되어 있는 자산(주식, 채권, 상품, ELS등)을 말하며, 통상 집합투자재산의 50%이상을 투자하는 자산입니다.
개방형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일부 유동성자산을 제외하고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설정	집합투자계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